

動力資源部告示〈第81-211号〉

— 石油類製品 最高販売価格 —

石油事業法 第15条의 규정에 의해 国内石油類製品 最高販売価格과 販売手数料의 最高額을 별첨과 같이 告示한다.

1981. 11. 28

動力資源部長官

첨부 : 国内石油類製品 最高販売価格 및 販売手数料의 最高額.

부칙 : 1. 이 告示는 1981. 11. 29. 00 :

00時부터 시행한다.

2. 動力資源部告示 第81-185号 (81. 4. 18)는 이 告示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国内 石油類製品 最高販売価格

가. 製造場 반출가격 (단위 : 원/ℓ)

유종별	구분	반출가격	세포함가격
고급 휘발유		391.64	990.85
보통 휘발유		272.78	690.13
등유		237.34	261.07
저유황경유(0.4%)		271.25	255.71
경유		211.25	248.64
저유황B-C유(1.6%)		199.87	219.86
경질중유		195.82	215.40
저유황B-C유(2.5%)		192.23	211.45
중유		185.50	204.05
B-C유		179.48	197.43
제트유		250.30	275.33
나프타		159.76	175.74
용제		449.37	494.31
아스팔트		212.20	233.42
프로판(일반용)(원/kg)		641.32	705.45
“(도시가스용)(”)		413.86	455.25
부탄(일반용)(”)		640.19	704.21
“(도시가스용)(”)		412.40	453.64

나. 精油会社 全国均一輸送費

(단위 : 원/ℓ)

유종별	수송비	적용지역
휘발유	9.84	서울, 仁川, 水原, 春川, 原州
등유	5.89	江陵, 목포, 황지, 淸州, 忠州
저유황경유(0.4%)	6.29	제천, 天安, 大田, 洪城, 서전
경유	6.29	오전, 群山, 全州, 裡里, 정읍
저유황B-C유(1.6%)	5.89	南原, 新泰인, 木浦, 麗水, 順天
경질중유	5.89	강진, 陽山포, 光州, 법성포
저유황B-C유(2.5%)	5.89	삼전포, 忠武, 馬山, 靑州
중유	5.89	釜山, 蔚山, 浦項, 大邱, 安東
B-C유	5.89	점촌, 金泉, 榮州, 濟州
제트유	5.89	溫山
프로판(일반용)(원/kg)	35.37	
부탄(일반용)(원/kg)	34.50	

註) : ①상기 수수료는 精油会社로부터 구매시 제조장

가격(세포함가격)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산 됨.

- ② 精油会社는 상기제품에 대하여 상기 적용지역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별도의 수송비를 징구할 수 없음.
- ③ 상기 적용지역에서는 제품인도 지점의 우선순위는 精油工場, 저유소, 부두, 역두임.
- ④ 精油会社는 구매자가 상기 적용지역에서 제품인도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에서 인도하여 줄 책임을 지며, 구매자 요구지역과 다른지역에서 인도하게 될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까지의 수송실비를 구매자에게 보상하여야 함.
- ⑤ 발전산업용 벙커C油에 대한 수송비는 精油工場 인접지역 발전소 및 타 발전소 구분없이 각 발전소 도착기준 3.34/ℓ이 균일하게 적용됨.
- ⑥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濟州道내에 일정량의 제품을 비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精油会社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.
- ⑦ 精油会社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류를 정유공장(각 정유회사의 釜山, 仁川, 蔚山, 溫山, 麗川소재의 저유소를 포함한다)에

서 구매하여 그 책임으로 수송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상기 균일수송비를 징구할 수 없음.

石油類製品販売手数料의 最高額

(단위: 원/ℓ)

유 종 별	代理店	注油所 및 판 매 소
고 급 휘 발 유	25.52	39.79
보 통 휘 발 유	17.41	22.62
등 유	10.10	14.94
저 유 황 경 유(0.4%)	9.41	14.59
경 유	8.94	14.13
저유황 B - C 유(1.6%)	9.10	-
경 질 중 유	7.91	-
중 유	8.10	-
B - C 유	8.17	-
프로판(일반용)(원/ kg)	71.63	102.55
부 탄(")(")	66.78	-

註) : 상기 手数料는 주유소(판매소) 또는 수요자까지 수송비등 제경비를 포함한 것임.



動力資源部告示(第81~218号)

— 石油事業基金의 징수를 위한 基準價格, 原油 또는 石油製品의 輸入에 따른 損失補填基準 —

石油事業法 第17条의 3,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輸入業者가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과 관련하여 기준가격 및 同法 第17条의 4 第3号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填 基準을 石油事業法施行令(이하 “令”이라 한다) 第9条의 4 및 第9条의

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.
1981年 12月 9日
動力資源部長官

1. 石油事業基金의 징수를 위한 基準

가. 基準原油價格

(1) 基準原油價格은 原油의 본선인도가격(FOB)을 기준하여 배럴당 美合衆國通貨 32.92달러에 690원 / 달러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(2) 令 第9条의 4의 규정에 의하여 原油의 종류 및 質에 따른 비례치를 부여한 기준원유가격은 다음과 같다.

油 種 別	原 油 의 質		比 例 值	基 準 原 油 價 格	
	A P I	硫 黃 含 量		81. 4. 19~ 81. 11. 28통관原油	81. 11. 29이후 통관原油
1. Getty Co.의 Wafra 原油 (Eocene, Burgan)	16.4°~22.4°	2.7%~4.5%	0.858	26.98 \$ / B ×677.80 원/\$	28.25 \$ / B ×690 원/\$
2. 베 네 주 엘 라 産 Menemota / Mara 原油	18°~21°	1.7%~2.5%	0.931	29.27 \$ / B ×677.80 원/\$	30.65 \$ / B ×690 원/\$

나. 석유사업법 第17条3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金額은 輸入 原油 1배럴당 美合衆國通貨 3.50 \$ (備蓄 基金 1.50 \$, 安定基金 2 \$)에 船積日로부터 30日 되는날의 換率을 乘한 金額으로 한다.

2. 原油 및 석유제품 輸入에 따른 損失補塡기준

가. 원유수입에 따른 損失補塡기준

(1) 基準原油價보다 高價로 도입한 原油에 대한 손실보전:

令 第9条의 5, 第2項第1号의 규정에 의하여 原油를 기준가격보다 高價로 도입하는 경우의 高價差額에 대한 補塡金額은 <原油의 實導入 本船引渡가격×船積日로부터 30日 되는날의 換率-基準原油價格>×1,036363에서 原油를 기준가격보다 低價로 도입한 경우의 低價差額(<기준원유가격-원유의 實도입 本선인도가격×船積日로부터 30日 되는날의 換率>×1,036363)을 控除한 金額으로 하되, 이 경우 공제할 低價差額이 高價差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金額을 次期 원유도입 高價差額에서 공제한다.

다만, 原油의 實도입 本선인도가격 또는 그 輸入附帶比率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併급에 精算할 수 있다.

(2) 원유도입 평균가격보다 高價로 도입한 原油에 대한 손실보전:

原油導入 平均가보다 高價로 도입되는 원유에 대한

여는 第1項의 高價差額 補塡金額에서 [(원유의 實導入 本선인도가격-원유도입 平均가격 33.7164 \$/배럴)×30%×船積日로부터 30日 되는 날의 換率]을 공제한다. 이 경우 원유도입 平均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Getty Co.의 Wafra(Eocene, Burgan) 原油에 대하여는 同원유에 대한 比例值 0.858을 乘한 28.9287 \$ / 배럴을, Menemota / Mara 原油에 대하여는 同원유에 대한 比例值 0.931을 乘한 31.39 \$ / 배럴을 각각 적용한다.

나. 石油製品輸入에 따른 損失補塡기준

令 第9条의 5, 第2項第2号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輸入에 따른 損失을 補塡하고자 할 경우의 基準은 1 배럴당 [石油製品의 수입가격(運賃, 保險料 포함가격에 輸入附帶費用을 포함한다)×船積日로부터 30日 되는날의 換率]에서 稅前 工場渡가격을 공제한 金額으로 한다.

附 則

① 이 告示는 1981年 11月 29日 이후 通關된 分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告示에서 實導入 本船引渡가격이라 함은 프 레미엄을 포함한 價格을 말하며 仲介手数料 所要分을 제외한다.

③ 이 告示 시행이전에 通關된 分에 대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. 다만, 原油의 종류 및 質을 감안한 基準原油價格은 이 告示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81年 4月19日 이후 通關된 分부터 적용한다.

④ 動力資源部告示 第81-188号(81年 4月27日)는 이 告示 시행일에 이를 廢止한다. *